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수경은 종전의 8월에서 7월로, 상경은 종전의 10월에서 6월로 각각 단축하고, 일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입영일로부터 5월로 하여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소요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대통령령 제18861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의2중 “법”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3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중 “10월 20일”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제6장에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 및 자산총액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제16017호

관

부

2005. 6. 13. (월요일)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의 총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 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동 가맹점으로 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일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의3(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 설치) ①도서·문화전 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 의 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인증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 명한 자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중 한국문화예 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3.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회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 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 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0조의4(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 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 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를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이 영”을 “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으로, “진흥원장이”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로 한다.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제8장(제37조 내지 제4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의 제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0장에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설립등기)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43조의3(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 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43조의4(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5(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계획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43조의7(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의8(조사·연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중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중 “진흥원 및 전당”을 “전당 및 번역원”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법 제23조의2제4항”을 “법 제23조의18제4항”으로 한다.

제11장(제46조)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제12조중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한다.

제30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의 구성 준비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736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에 따라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 및 절차와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의 날 변경(영 제26조제1항)

- (1) 기념일을 특정한 날로 지정함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행사개최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 (2) 현행 매년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하던 것을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함.
- (3) 문화의 날을 특정일이 아닌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의 날과 관련된 기념행사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음.

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영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신설)

- (1) 법률에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 및 자산총액, 전년도 상품권의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 등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상품권에 대하여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객관적·전문적인 인증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를 두도록 함.

- (3)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상품권의 인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증심의회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영 제43조의3 신설)

- (1) 법률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동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와 문화예술의 식견을 갖춘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3)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추천(영 제43조의5 신설)

- (1) 위원추천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후보자의 2배수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를 추천하되,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위촉할 수 있고 위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의 성과 평가(영 제43조의6 내지 제43조의8 신설)

- (1) 법률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금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동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고,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3)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과 관계 전문기관 등에 대한 연구의뢰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